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5. 28

관광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5월 2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5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188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2001. 5. 16)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가.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 건설교통국장

- 부위원장 : 건설교통국장 → 지역개발과장

- 간 사 : 과장 → 업무담당사무관

- 서 기 : 담당사무관 → 담당자

- 위원 임명 대상범위 확대
 - 도내외 전문가 →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함
-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
 - 임기를 2년으로 하되 →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 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리
 - 건설기술심의대상 및 심의범위 일부 삭제(제9조 및 제10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업무 기능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한편 위원 임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내외 전문가”를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제4조중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과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업무담당사무관으로”을 “담당자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범위)”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중 “사항”을 “사항 및 신기술 적용여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수리계산서 및”을 “수리계산서 및 필요시”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을 “건설공사의 경우”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생략)	제2조(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	제2조(위원회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②-----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과장-----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내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과 <u>도내의 전문가</u>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내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과 <u>도내의 전문가</u>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 -----		
제4조(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	제4조(임기)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		
제5조(간사 및 서기)①(생략)	제5조(간사 및 서기)①(생략)	제5조(간사 및 서기)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도본청 건설기술심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도본청 건설기술심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 업무담당사무관----- ----- 담당자로 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삭제>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현행	개정안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p> <p>4.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사</p>	
<p>제10조(심의범위) (생략)</p> <p>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p> <p>3내지 4(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p> <p><삭제></p> <p>2. ----- ----- ----- -----</p> <p>-----사항 및 신기술 적용여부</p> <p>3내지 4(현행과 같음)</p>
<p>제11조(심의요청) ①(생략)</p> <p>1내지 6(생략)</p> <p>7. <u>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u></p> <p>8(생략)</p> <p>②내지③(생략)</p> <p>④ <u>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u>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심의요청) ①(현행과 같음)</p> <p>1내지 6(현행과 같음)</p> <p>7. <u>수리계산서 및 필요시</u></p> <p>8(현행과 같음)</p> <p>②내지③(현행과 같음)</p> <p>④ <u>건설공사의 경우</u>----- ----- -----</p>
<p>제14조(소위원회 등) ①내지②(생략)</p> <p>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④내지⑦(생략)</p> <p><신설></p>	<p>제14조(소위원회 등) ①내지②(현행과 같음)</p> <p>③ ----- <u>위원회의 위원장</u> ----- -----</p> <p>④내지⑦(생략)</p> <p>⑧ <u>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관계법령 발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0.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다른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